

2020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1.01.07. (목) 14:00~16:0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3명 중 11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주창윤(의장), 성혜경, 조정환, 이도희, 송미경
 - 나. 직원대표 : 조현미, 이혜숙
 - 다. 학생대표 : 정수빈, 신동인
 - 라. 동 문 : -
 - 마. 외 부 : 장유식(부의장), 손인웅
4. 불참자 : 최형심, 박희옥(동문)
5. 자문 안건
 - 1) 2020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2) 2021학년도 적립금 용도 변경(안)
 - 3) 2021학년도 자금예산(안)
6. 심의 안건
 - 1) 2022학년도 첨단학과 신설 신청(안)
7. 기타 안건
 - 1)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 2) 제9대 총장 선출 관련 법인 및 총장 답변 요구(안)

1. 자문 안건 - 2020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경영기획팀장이 2020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2020학년도 예산상 추정 적립기금 내역을 보면, 60억 원 정도 기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 예산상으로 현재 적립기금 증감이 약 -60억원으로 되어 있다. 결산 후에는 사용되지 않은 자금 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기금 감소액이 예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동안 관리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음에도 올해 관리운영비가 더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시설 사용이 줄었기 때문에 전기·수도·가스요금이 평년보다 감소한 것이다.

- 2020학년도에 신입교원을 상당수 채용했고, 그에 비해 정년퇴임 교원은 많지 않았다. 시간강의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2020학년도 본 예산 대비 추경예산에서 교원 인건비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신입교원을 상당수 채용했음에도 교원 보수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학교의 급여 체계가 복잡하고 직군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수 관련 예산을 미리 예측하여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교원의 경우, 정년제 전임교원, 계약제 전임교원, 전담교수, 비전임교원, 강사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급여 체계가 있어 매우 복잡하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 매년 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교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보수를 편성한 후 추경예산 편성 시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가.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감액이나 면제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 2020학년도 1학기에 수업료 실납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관리운영비의 감소분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특별장학금은 지출 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 아니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원, 격려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특별장학금 지급(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법인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외에 법인전입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법인에서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전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법정부담금 기준은 우리 대학 뿐 아니라 대다수 대학들이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법인전입금은 2017학년도부터 매년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다. 현재 법정부담금은 전액을 법인에서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주로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 지표 중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한 비율을 의미하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있는데, 현재 우리대학 법인의 경우 85.4%로 높은 비율이다. 단, 비율은 높으나 총 수입이 적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적은 것이다.

2. 자문 안전 - 2021학년도 적립금 용도 변경(안)

경영기획팀장이 2021학년도 적립금 용도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2018학년도에 건축기금에서 상당액을 특정목적기금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는데, 추가 인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특정목적기금 중에서 대학역량강화기금이 2021학년도 기말에 일부 잔존하겠지만, 2022학년도 예산 편성 및 경영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기금과 건축기금의 일부를 추가로 용도 변경하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자문 안전 - 2021학년도 자금예산(안)

경영기획팀장이 2021학년도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예상 학생등록율이 높은 것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 학부의 경우에는 정원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대학원을 포함하여 정원 확보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0%에 미달하는 것이다. 학부는 정원보다 등록 인원이 초과하지만, 대학원은 등록 인원이 정원대비 미달이다.
- 2020학년도 추경예산 대비 교육부대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부대수입 증가는 주로 기숙사 정상 운영 등을 감안한 기숙사 관비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또한, 입시 수수료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임대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크며, 2021학년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매년 부족한 경상비를 적립금에서 인출하게 되면 언제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적립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앞서 예산 편성이 어려운 시점을 예상한다면, 예년 수준의 예산 운영을 전제로 가정하여 향후 3년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 예상은 재정지원사업과 맞물려있다. 2021학년도에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이 종료되는데, 학생경비, 연구경비 등 많은 부분의 교육환경 개선비를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에 재정지원사업 수준이 2020학년도 수준에 못 미친다면 2022학년도에라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 적립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예측하기 보다는 2021학년도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학교가 큰 결정을 해야 하는 해라고 판단된다.
- 2021학년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결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전체 교수회의에서도 이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교내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기 상황이라고 했지만 2021학년도 예산 편성은 작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보직교수나 교내 여러 위원회에 속한 교수들과 그렇지 않은 교수들이 느끼

는 바가 다르다. 교내 구성원에게 알아듣기 쉽고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교내 구성원들이 갑작스럽게 큰 변화를 겪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 기획처에서 적립금 운용 계획 등 향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체적인 재정 구조 분석을 진행하였고,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올해 신입 교원의 임금에 변화가 있었다. 추후 이러한 재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구성원에게 공유할 것이다. 임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조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교내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의 시작을 위하여 교내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내용을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것이다. 또한 2021학년도에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수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현 수준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수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 행정부서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전년도 대비 30% 이상 삭감하도록 권고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은 학교 재정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 이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급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최근 급여 삭감의 이야기가 있다. 급여는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는 교직원의 급여를 보전해 주어야 하며, 학교가 부득이하게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면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의 장학금도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 금일 교육부에서 법령이 개정되므로 예산의 계정 과목 변경을 반영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었다. 회계처리에 대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금일 평의원회 회의 전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회계처리에 있어 기술적인 부분의 조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는 있으나, 심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4. 자문 안건 -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

경영기획팀장이 단과대학 및 학과명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5. 심의 안건 - 2022학년도 첨단학과 신설 신청(안)

기획처장이 2022학년도 아트앤디자인스쿨 첨단학과(뉴미디어디자인전공) 신설 신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학과 정원을 25명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아트앤디자인스쿨 소속 다른 전공들의 정원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 미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오는 것인가.

- 미술 실기를 하는 학생만 입학 가능하다.

○ 우리 대학에서 AR/VR을 하는 다른 전공과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가?

- 디지털미디어학과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신설되는 첨단학과는 디지털미디어 학과의 기술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고 예술과 관련된 부분만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교원을 초빙할 계획인가. 산업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성격이 모두 있을텐데, 이는 성격이 독특할 수 있지만 애매할 수도 있다.

- 아트앤디자인스쿨 소속 교원 간담회를 통해 신설학과 성격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한 바, 디지털미디어학과는 디지털과 디지털의 결합이며 뉴미디어디자인전공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으로 미적인 콘텐츠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디자인학과와 중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디자인학과와 별도로 협의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다. 첨단학과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 AR/VR이 부각된 측면이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술 실기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미디어학과와 성격이 구별될 것이다. 아트앤디자인스쿨이 가진 재원을 나누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1~2명의 신규 교원 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각디자인전공 소속 교수의 이동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시각디자인전공에서 좀 더 발전하여 뉴미디어디자인전공이 분리되어 만들어진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 뉴미디어라는 용어는 첨단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 명칭을 위한 고민이 있었으나, 뉴미디어디자인전공의 뉴미디어는 아트앤디자인스쿨의 관련 분야 용어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된 뉴미디어와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교육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정치적인 유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추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첨단학과 신설과 같은 사항은 관련 학과 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내 구성원이 참여하

여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다양한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존의 컴퓨터학과와 콘텐츠디자인학과가 통합되어 디지털미디어학과가 되었는데, 학과 통합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 학생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에 데이터사이언스학과가 신설되었다. 이제 뉴미디어디자인 전공까지 신설된다면, 학생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트앤디자인스쿨, 미래산업융합대학 소속 학생들이 뉴미디어디자인전공의 소속 및 성격에 대한 의문점이 많을 것 같다. 학생들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첨단학과 신설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아트앤디자인스쿨에 전공이 신설되어 소속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진다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뉴미디어디자인전공 신설에 대한 아트앤디자인스쿨 소속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아트앤디자인스쿨,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생회장과 뉴미디어디자인전공 신설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2022학년도 첨단학과 신설 신청(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6. 기타 안건 -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경영기획팀장이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에 조교를 1인 포함하도록 하는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조교의 정의가 학업을 병행하는 자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조교는 대학원생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중 학부생은 1명, 대학원생은 2명이 되는데 이에 따른 불균형의 문제는 없는가. 조교의 자격상실 요건을 직원과 같이 적용 예정인데, 조교는 신분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졸업, 휴학 등 직원과는 다른 성격의 자격상실 요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학의 조교에는 대학원생 조교 뿐 아니라 학사조교도 포함된다. 현재 조교로 임용된 자는 모두 조교에 포함된다. 대학원생 전원이 조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급적이면 조교 평의원, 대학원 학생 평의원 선출 시,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출하고자 하나,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 학사조교, 교육조교 모두 임용 기간이 최대 2년이므로 조교 평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생 평의원과 같이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 고등교육법에 학생 평의원을 제외한 모든 평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교 평의원의 임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 동안 보궐 평의원으로 선발해서 운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1년마다 변경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조교 평의원의 자격 요건에 '6개월을 초과하여 평의원 활동이 가능한 자'라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 대학평의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7. 기타 안건 - 제9대 총장 선출 관련 법인 및 총장 답변 요구(안)

- 의장이 기타 안건으로 제9대 총장 선출 관련 법인 및 총장 답변 요구(안)을 제안하다.
- 법인 이사회가 제9대 총장으로 교내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선출한 것에 대하여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교내 구성원 전반이 이를 비판하고 있다. 제9대 총장 선출에 있어 교내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선출한 합당한 사유에 대한 법인의 답변과 현 총장의 선거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 및 총장 선임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밝힌 내용과 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사실 여부 차이에 대한 현 총장의 답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학평의원회가 다양한 교내 구성원으로 구성된 공식 기구로서 법인과 총장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평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법인 이사회의 총장 선출 과정의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이사회의 속기록이나 녹취록이 있으면 법인 이사회가 교내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선출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 이사회의 속기록이나 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공개할 것을 법인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의록은 회의 과정과 맥락이 생략될 수 있어 불완전하므로 향후에도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총장 선출과 같이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회의에 있어서 법인이 속기록이나 녹취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법인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 교내 전체 구성원이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1순위로 선택한 후보자가 총장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유를 법인에 요청해야 한다. 더 이상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인이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내용을 확인해 준다면 법인의 의견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러한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 총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안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학평의회는 교내 구성원의 각각 개별 단위에서 대표성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 있어 교내 구성원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서 총장 선출 관련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특별 안건으로 처리하여 교내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구성원들에게 해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법인과 총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받으려면 개별 단위의 구성단체가 아닌 대학평의회가 교내외 여러 구성원이 포함된 공식 기구로서 법인과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평의회는 답변을 받으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공지해야 할 것이다.
- 제9대 총장 선출 관련 법인 및 총장 답변 요구(안)에 대해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8.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20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9. 차기 회의 일정

- 제11대 대학평의원 임기가 2021년 2월 28일까지이므로, 2020학년도에는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회의는 4월 초 경에 결산 자문을 위하여 제12대 대학평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 학칙 개정(안) 등이 있으면 2월에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의장이 16시 0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1월 7일

의 장 주 창 윤

(서명)

부 의 장 장 유 식

(서명)

평 의 원 성 혜 경

(서명)

평 의 원 조 정 환

(서명)

평 의 원 이 도 희

(서명)

평 의 원 송 미 경

(서명)

평 의 원 조 현 미

(서명)

평 의 원 이 혜 숙

(서명)

평 의 원 정 수 빈

(서명)

평 의 원 신 동 인

(서명)

평 의 원 손 인 웅

(서명)

간 사 하 성 호

(서명)